



개정 환경보전법 주요내용 해설

(연재 Ⅱ)

정혁진 / 환경청 법무담당관

Ⅲ. 배출부과금제도의 개선

1.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가. 부과대상 배출시설

수질·대기·악취배출시설 (소음·진동 배출시설은 제외)

나. 부과대상 오염물질

1) 수질배출시설 : 13개

유기물질 (BOD, COD) · 부유물질 (SS) 크롬 및 그 화합물 특정유해물질중 9개

*순수질량 (오염부하량) 을 계산하여 kg 당 단위로 부과

2) 대기배출시설

아황산가스·불소화합물 (특정유해물질) ·분진

*순수질량을 계산하여 kg 당 단위로 부과

3) 악취배출시설

*구성물질이 복잡다양함으로 이들 전체를 통합하여 하나의 단일 오염물질로 취급하며, 체적 1,000 m³ 당 단위로 부과

2. 배출허용기준

가. 가스 : 시설별, 연료별, 지역별로 차등 설정

나. 분진 : 시설별, 연료별, 시간당 배출가스량별로 설정

다. 소음, 진동 : 소음과 진동 배출시설 구분

설정·진동 배출허용기준 설정

*보정표에 의하여 평가진동 레벨이 60 dB(V) 이하

라. 악취 : 측정지점을 측정 당시의 여건에 맞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함.

마. 폐수 : 이수목적에 따라 전국을 청정, 가나, 다 및 특례지역으로 구분하고 지역별로 배출허용 기준을 차등설정.

*배출농도는 시간과 더불어 변동함은 사실이나, 배출허용기준은 변동하는 농도의 평균치를 설정한 것이 아니고 변동하는 농도의 최대치가 허용기준 이내이어야 함.

3. 오염자부담원칙 적용 기준

가. 농도규제기준

1) 개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규제

2) 문제점

①농도는 항상 변동하는 것이므로 점검 시점에 따라서 허용기준초과 여부도 변동, 따라서 점검시점에 따라서 위반여부의 판정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후확인 곤란.

②배출시설의 배출량에 관계없이 위반여부가 오직 농도에만 의존하므로 다량 배출업소에 유리하고 소량배출업소에 불리.

③위반여부를 당국에서 적발하기 전까

지는 부과금부과 불가능, 행정비용 과다 소요

나. 총량규제기준

1) 개념

농도에 관계없이 환경에 배출될 오염물질총량을 지정 또는 이를 대상으로 부과금 부과.

2) 장 점

①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없으며 적발을 위한 행정비용 절약 가능

②대형 및 소형배출업소간의 공평성 유지

3) 문제점

①배출오염물질을 총량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영향권별 관리로 지역별 오염속감총량을 파악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기술적, 과학적 시스템의 설치, 운영이 선결요건이며, 획일적 농도규제기준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공단지역등 오염우심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실시 필요

다. 구미의 제도와의 비교

	구	미	한	국
설치허가	한국과 비슷	기술감리 적합판정	설치허가만 존재하며 조업허가에 해당되는 개념은 없음.	
조업허가	조업시의 구체적 조건명시 배출허용기준의 개별화 평균 . 최대 배출허용농도 1일 배출허용 오염부하량 지정	조업시의 조건을 모두 법령에 규정 배출허용기준 단일 (금번 일부 차등화) 평균치 . 최대치 개념 없음.	금번 자진신고제도 도입	
운영방식	일정기간 (2년)	자가측정신고횟수 등 수리 . 고장시이 신고의무 규정		

	마다 갱신	갱신규정 없음.
지도 . 단속	조업허가조건 위배여부	법규에 의한 허용기준 위반 여부
배출부과금부과 . 산정	배출허용 기준과 별도로 산정	배출허용기준을 근거로 산정

4. 부과금 부과절차 및 산정방법

가. 지도 . 점검

1) 지도 . 점검사업장 관할

환경지청장 지도 . 단속대상 사업장

2) 검체의 의의

①법령위반 (배출허용기준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법상의 객관적 근거

②부과금 산정시 배출기간의 기산일

- 실제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는 검체일을 배출기간 산정의 기산일로 함 (영 제 17 조의 9)

③부과금 산정시 오염상태의 결정기준

- 부과금 산정시 오염물질의 농도 및 배출량은 검체시의 농도 및 배출량을 적용 (영 제 17 조의 9)

나. 개선명령 (시 . 도지사)

근거법률 법 제 17 조

1) 명령사유

①법 제 14 조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서 영 제 17 조의 5에서 정하는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한때

②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정상운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의 부착명령을 불이행한 때

2) 명령시점 : 배출허용 기준위반 또는 기기등 부착조치 불이행이 인정된 때

3) 수명자 : 당해 위반사업자

4) 명령시 지정할 사항

①개선할 내용의 지정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 . 개선 . 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

②부령 제 27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기간의 지정

5) 개선명령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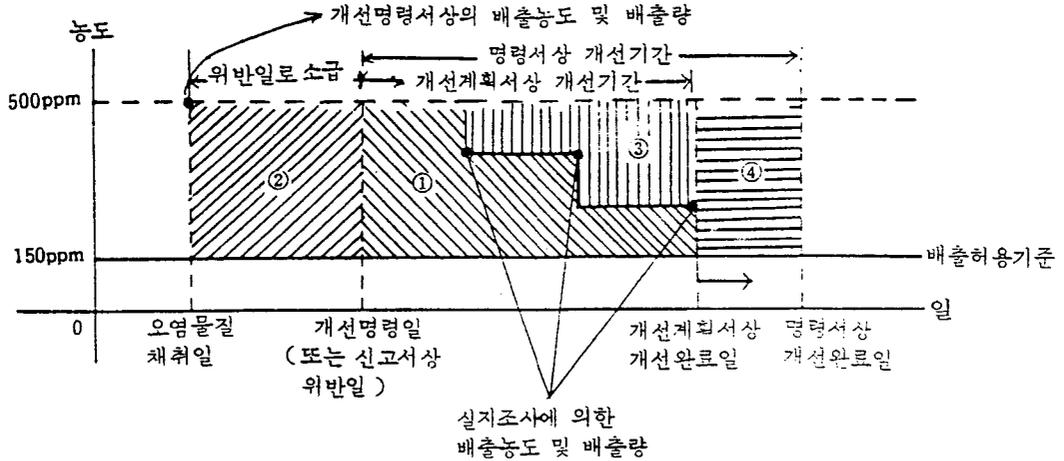
①개선명령이라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사업자는 위법하게 배출시설을 가동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부과금 부과대상이 될 뿐 아니라 조업정지 등 각종 행정제재 및 벌칙적용의

대상이 됨.

②자진신고자의 경우는 개선명령 없이 신고에 의한 부과금 부과처분을 하게 됨. 또한 개선명령에 수반되는 각종 행정제재 및 벌칙적용의 대상에서 제외됨.

다. 개선계획서

1) 배출부과금 부담의 규모 비교



가) 무신고자의 경우

- ①개선계획서 미제출시의 부과대상 면적 : 그림중(1)+(2)+(3)+(4)
- ②제출되었더라도 그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 그림중 면적(1)+(2)+(3)+(4)
- ③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내용도 명시된 경우
개선기간중 농도 및 배출량 변경명시 : (1)+(2)
개선기간중 농도 및 배출량 변경불명시 : (1)+(2)+(3)

나) 자진신고자의 경우 (1)

2) 무신고자의 개선계획서

가) 개선계획서 제출기한 및 내용

- ①기한 : 개선명령일로부터 15일 이내
- ②계획서에 명시되어야 할 내용 (영제 17조의 6, 규칙 제 30조)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결함 또는 고장에 의한 경우>

- 개선기간·개선내역 및 설계도
- 배출시설의 가동 중단 또는 제한 내용 (오염물질 농도,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증빙서 첨부)
- 공법 등의 개선내용 (오염물질 농도,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증빙서 첨부)
- 오염물질 처리방식 및 처리효율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운전미숙에 의한 경우>
- 오염물질 발생량 및 방지시설의 처리능력 비교내용
- 배출 허용기준 초과사유 및 대책 내용

나) 개선계획서 제출의 의의

- i) 개선계획서 미제출 또는 제출되었더라도 영제 17조의 6 및 규칙 제 24조에서 정하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①개선기간중 개선명령서상에 명시

된 오염상태 (배출농도 및 배출량)로 부과금을 산정하게 됨으로 사업자에게 불리.

②부과금 부과대상 총면적 : 위 그림 중 면적 (1)+(2)+(3)+(4)

ii) 영 제 17조의 6 및 규칙 제 24 조에서 정하는 내용이 명시된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①개선기간중의 배출시설의 가동 중단 또는 오염물질의 농도 및 배출량 변경을 증명하는 근거서류가 첨부된 경우.

- 동 내용의 사실여부를 실지조사 확인하여 위의 그림(1)의 면적처럼 개선기간중의 부과대상오염물질량을 산정

- 부과금 부과대상 총면적 : 위 그림중 면적 (1)+(2)

②가동중단 또는 배출농도 및 배출량 변경을 증명하는 근거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 개선기간중 개선명령서상에 명시된 오염상태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 (위 그림중 면적 (1)+(3))

- 부과금 부과대상 총면적 : 위 그림중 면적 (1)+(2)+(3)

③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전미숙의 경우

- 오염물질 발생량, 방지시설의 처리능력,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유 및 그 방지대책이 명시된 때는 개선계획서와 개선완료보고를 동시에 제출할 수도 있음.

- 부과금 부과대상 총면적 : 위 그림중 면적(2)

3) 자진신고자의 개선계획서

가) 자진신고 시점

①신고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음.

나) 신고사유

①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

변경·고장·수리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라. 배출부과금 산정 및 부과

1) 배출부과금 산정 기본공식

부과금 = 오염물질 1kg (또는 배출물질 1,000 mV³) 당 부과금액 × 배출허용기준 초과 오염물질 배출량 (또는 배출물질량) ×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또는 악취농도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위반회수별 부과계수

2) 배출허용기준 초과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영 제 17조의 9 제 1항)

가) 산정공식 : 배출허용기준 초과 일일 오염물질 배출량 × 배출기간 (조업일수)

나) 일일유량 산정방법 : 측정유량 × 일일조업시간

측정유량단위 폐수 : ℓ/min

가스 : m³/H

일일조업시간 : 최근 30 일간의 1 일 조업시간 평균치

다) 배출기간

①자진신고자

개선계획에 명시된 비정상운영 개시일로부터 개선완료일

②무신고자 (무허가자 포함)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 (알수 없을 때 오염물질 검체 채취일)로부터 개선명령 (이전명령·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포함)이행완료일

3)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영 별표 2, SO₂의 경우)

①배출허용기준 20%미만 초과시 : 부과계수 1

②배출허용기준 20%이상 100%미만 초과시 : 20%초과 단위로 0.3씩 누증 (1.3-1.9)

③배출허용기준 100%이상 400%미만 초과시 : 100%초과단위로 1씩누증 (2.5-4.5)

라) 배출량 및 배출기간 산정기준 총괄

구	분	배출농도 및 배출량	배출기간	
			시점	종점
자진신고자		신고에 의한 허용기준 위반 확인시	신고서상 지정일	신고서상 완료일
무신고자	추정적용시 (개선계획서 미제출 또는 내용 불명시)	개선명령서상 (오염물질 채취시)	오염물질 채취일	개선명령서상 (지정일)
	실지조사시	오염물질채취일 - 개선명령	오염물질 채취일	개선명령일
		개선기간중	개선계획서상 (배출농도 및 배출량 변경)	개선명령일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모두 배출허용기준 초과시는 높은 수치의 농도기준으로 산정

4)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영 제 17조의 10 제(1)항)

- ① 시행년도 (1987년) : 2.0736
- ② 다음년도부터는 전년도 부과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율을 감안하여 환경청장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함.

5) 위반회수별 부과계수 (영 제 17조의 10

제(2)항·제(3)항)

- ① 2회계년도를 한 단위로 함.
- ② 위반회수가 0이면 100/100, 첫회부터 105/100 곱하여 추가함.
- ③ 위반회수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 (조업정지, 이전, 폐쇄명령 포함)을 받은 회수로 함. (단, 자진신고자는 위반회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 ④ 회수의 계산은 분야별 (대기·수질등)로 따로 계산함. * <다음호에 계속>

新明心寶鑑 10

呂榮公이 曰內無賢父兄하고
外無嚴師友而能有成者鮮矣 나라.

- 訓子篇에서 -

여영공이 말하기를 「집안에 지혜로운 아버지와 형이 없고 밖으로 엄한 스승과 벗이 없으면 능히 뜻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드므니라」고 하셨다.

즉, 사람이 큰 일을 이룩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어진 부형(父兄)의 뒷받침과 엄한 스승이나 벗의 지도편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뜻이다.